

4-H지도자 교육과정 운영규정

2023년 12월 26일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4-H활동지원시책이 정한 4-H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격기준을 정하고 정관 제21조의 4-H지도자의 자격을 구비토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의 관장) 4-H지도자 교육과정의 운영은 한국4-H본부 회장의 책임하에 중앙사무국에서 수행한다. 단, 지역본부는 육성지도자교육의 입문과정과 자원지도자교육의 중급과정을 한국4-H본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내용은 한국4-H본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3조(4-H육성지도자 교육과정) ① 교육과정은 입문과정, 고급과정,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, 한국4-H본부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4-H지도자로서 반드시 입문과정 이상을 수료하여야 한다. 단, 박사급 이상의 연구위원은 연구위원회로 교육이수를 갈음할 수 있고, 현역 4-H회원은 중앙본부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고급과정은 입문과정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수료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③ 각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.

구분	교육과정명	시간	교육내용	주관	자격증/수료증	비고
입문과정	• 4-H육성지도자 입문과정	15H	4-H학습, 개인 집단학습 병행	중앙 및 지역본부	수료증 및 자격증 발급	3년 유효
고급과정	• 4-H육성지도자 고급과정	15H	조직개발 등	중앙본부	수료증 발급 4-H교수요원자격증 발급	3년 유효
보수교육과정	• 4-H육성지도자 보수교육	5H	4-H육성정책 조직개발	중앙본부	수료증 발급	필요시

제4조(4-H자원지도자 교육과정) ① 교육과정은 입문과정, 중급과정, 전문과정, 교수요원과정으로 구분한다.

② 중급과정과 전문과정은 입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며, 교수요원과정은 중급 또는 전문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.

단, 농촌진흥기관과 한국4-H본부의 사전협약에 의해 농촌진흥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교육과정을 전문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 각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.

구분	교육과정명	시간	교육내용	주관	자격증/수료증
입문과정	• 4-H자원지도자 입문과정	3H (온라인)	4-H학습, 개인 집단학습 병행	중앙본부	수료증 및 지도자증 발급
중급과정	• 4-H자원지도자 중급과정	15H	4-H프로그램, 지도역량, 조직개발	시도본부 및 중앙본 부	수료증 발급
전문과정	• 4-H자원지도자 전문과정 (프로그램전문분 야 별로 과정개 설)	30H	청소년, 과제이수 전문교육	중앙본부 농촌진흥 기관	수료증 발급
교수요원과 과정	• 4-H교수요원과 과정	30H	교수요원 육성	중앙본부	4-H교수요원 자격증 수여

제5조(4-H전문지도자 교육과정) ① 4-H전문지도자 교육과정은 전문지도자의 능력제고를 위해 한국4-H본부에서 시행하며 시군구 단위 민간부문 전문지도자 교육과정은 한국4-H본부의 위임을 받아 시도단위 4-H본부에서 시행할 수 있다. 단, 교육과정의 내용은 한국4-H본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②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.

구분	교육과정명	시간	교육내용	주관	자격증/수료증
전문과정	• 4-H전문지도자 워크숍	15H	4-H학습, 개인 집단학습 병행	중앙본부	수료증 및 전문 지도자증 발급

제6조(교육기록 관리) 4-H지도자 교육 이수내용은 클로버넷에 등록해 그 기록을 관리하고 이수자의 요청 시 교육이수 기록을 발급토록 한다. 단 이수기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발급요청자에게 부담토록 할 수 있다.

부 칙

1. 2023년에 기 실시된 4-H육성지도자 입문과정교육은 본 규정 제3조의 입문과정 교육으로 인정한다.

1. 제3조 1항에 따른 대의원의 교육수료 의무는 2025년 대의원총회부터 적용한다.